

##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0. 16. 제천시장  
나. 회부일자 : 2007. 10. 16.  
다. 상정일자 : 2007. 10. 22.(제1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시민복지팀장 이양식)

#### 가. 제안사유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정 시행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,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,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
-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
-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
-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### 3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국가보훈법(2005. 5. 31, 법률 제7572호)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·봉사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

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자 보훈의 목적,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과 시와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7. 8. 31~ 9. 20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.

○ 조문 검토사항입니다.

동 조례 제7조 복지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제1호에서는 "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할 수 있다."고 되어 있는 바

○ 장애인복지법, 노인복지법, 모·부자복지법을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「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」를 2004. 7. 16일 조례 제644호로 공포·시행하여 생업지원을 위하여 매점, 자동판매기 설치, 위탁운영시 우선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와 수혜 범위의 상충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,

○ 본 조례안 시행될 경우 이에 따라 동조 2항에 따른 위탁시설을 포함한 시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조례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# 4. 질의답변 요지

-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나요?  
(박기석 의원)
  - 현행법상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.(시민복지팀장 이양식)

- 모법이 2005년 5월 30일 제정 되었는데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?(박성하 의원)
  - 충청북도 조례안이 금년도 4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.(시민복지팀장 이양식)
-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며, 본 조례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들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(박성하 의원)
  - 네, 잘 알겠습니다.(시민복지팀장 이양식)

## 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## 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## 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## 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